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복무 자기결재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 및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 조정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 특례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복무 자기결재 확대(안 제21조제1호, 제3호)

공무원이 7일 이전에 통보한 연가(반일 연가 포함) 및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출근시간 1시간 범위 변경)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기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연가의 경우 4일 이전으로 자기결재 가능 시기를 단축하고 유연근무의 경우 육아기(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출근시간을 2시간 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안 제16조의2)

채용된 전문경력관은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전보(소속 장관, 다른 기간 7년/같은 기관 5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재분배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 조정(안 제12조제5항)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최저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5급 3년 이상, 6·7급 2년 이상, 8급 이하 1년 이상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인사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근무성적 평가 점수 산정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나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해당 계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을 각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 평가받은 최근 1회 이상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그 기간은 3년(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5년)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7일”을 “4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사용
일부터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로서 2시간의 범위에서 출근시간
을 변경하는 유연근무. 이 경우 유연근무 당일의 근무시간은 점심시
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2조(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가 없는 평가 단위기간이나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해당 계급의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을 각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급에서 평가받은 최근 1회 이상의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 승진임용의 방법은 그 변경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할 수 있다.</u> <u><신설></u>	<u>⑥ ----- 제5항-----</u> ----- ----- ----- <u>제16조의2(전문경력관 필수보직 기간에 관한 특례) 인사특례운영기관의 장인 소속 장관은 「전문경력관 규정」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보직기간을 달</u>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연 락 처	(044) 201 - 8319